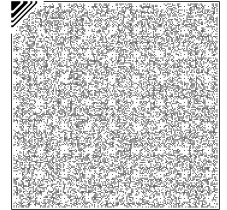




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



수신 각 사업장 귀하
(경유)

제목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추가방역 조치사항 안내

1. 평소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.
2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(2.6.)를 통해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유지하되,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중단* 시간을 당초 '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'에서 '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'로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고, 소속 근로자 및 관계 협력사, 기술지도 사업장 등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고용노동 군산지청 홈페이지에 게시)

* 식당·카페는 포장·배달만 허용하는 시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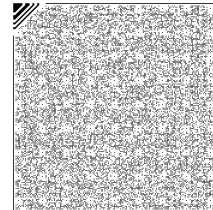
- 아 래 -

- 적용기간: 2021. 2. 8.(월) 0시 ~ 2021. 2. 14.(일) 24시
- 대상지역/시설: 수도권 외 지역(14개 시·도) / 아래표 참조
- 법적근거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 호

구분		중점관리시설 등(5개 시설)	일반관리시설(3개 시설)
변경 사항	21시~익 일 05시 → 22시~익일 05시	■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, 노래연습장, 실내 스탠딩 공연장, 식당·카페, 파티룸	■실내체육시설, 학원(교습소)· 직업훈련기관, 독서실·스터디 카페

※ 학원(교습소)·직업훈련기관 및 독서실·스터디카페의 2단계 수칙 중 '21시 이후 운영 중단' 부분은 '22시 운영 중단'으로 변경 적용

끝.



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장



근로감독관

황윤훈

산재예방지도 전결 2021.2.9.

과장

지용호

협조자

시행 산재예방지도과-870

(2021. 2. 9.)

접수

우 54076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5길 44 (조촌동 852-1 광주지방노동청 / <http://gunsan.moel.go.kr>
군산지청)

전화번호 063-450-0534 팩스번호 063-450-0593 / hwang0113@korea.kr / 비공개(7)

"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"